액화석유가스사고대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번호
246

제안년월일 : 1993년 12월 24일

제 안 자 : 이종길 의원외 14인

1. 주 문

도시의 급변한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공해가 없고 사용이 편리한 액화석유가스 사용 가구의 증가에 따라 빈번한 사고를 사전에 막고 안전한 시민생활을 영위토록 하고자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2. 제안이유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에 대한 설치기준 타당성 조사 및 안전관리 이행여부 등을 심도있게 확인하고 소비자에 대한 계도사항 등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민의 안전을 기하고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4. 참고사항

- 구성인원 : 13명(사회산업위원회)
- 활동기간 : 승인일로부터 1개월
- 특정사안 :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의 법규 준수사항 이행여부 조사 확인 및 이용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계도 실태 등